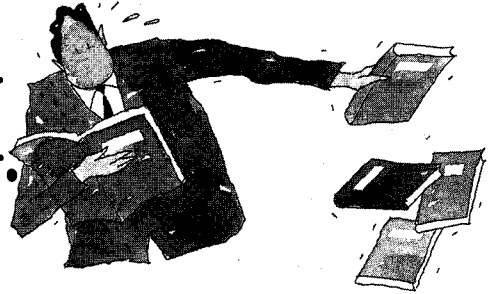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가 구체적으로 법제화 된다.



정부의 행정쇄신 위원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입법안으로 상정한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원안을
확정 을 하반기 입법작업이 들어간다.

■ 글/편집자

불량 상품으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수 있는 인체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에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제조물책임법(안)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상정되어 지난 9월 23일 행정쇄신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빠르면 금년내로 법제정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에 있다.

입법의 배경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상인이 판매하는 상품은 단순한 것이 대부분이고 구입자는 그상품을 구입할때 상품의 구조, 성능, 등을 파악하여 구입하므로 불량상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도 주의를 기울리한 매수인이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으나 계속된 산업발전에 따라 상품은 복잡 다양화되고 각종기능이 새롭게 나타나므로 소비자로서는 도저히 구조 성능 안전성 등을 파악할수가 없게끔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비자는 상품의 하자

로인한 신체적 물질적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하여는 소비자가 그 제조물에 대한 입증을 하기에는 그 제조물에 대한 지식이 너무없는데 반하여 제조자는 방대한 조직과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케 됨으로 인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 한사람 한사람으로는 이를 상대하기에 너무나 힘겹고 따라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또한 결함제조물에 의한 피해보상 책임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와 제조자 간에 직접계약 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으로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이러한 계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법제화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피해구제활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재에도 전기용품의 안전을 규제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등 많은 안전행정 규제제도가 있고 소비자 보호

기관등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안전행정규제방법은 정부와 기업간의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을뿐 직접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간접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게 되는 형편으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 피해구제활동도 물론 필요하지만 상호당사자간의 조정역할에 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입법을 제정하므로 거래당사자인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상의 책임문제로서 결함제조물로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보다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각국의 입법동향을 알아보면 미국은 1960대 이후 이제도를 판례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한 불법행위제도의 개혁 및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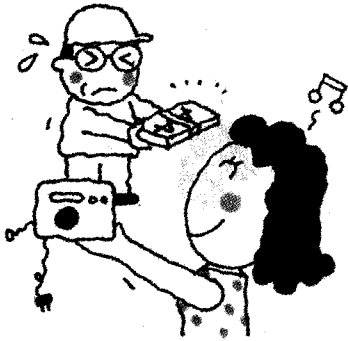
EC에서는 1985. 7.25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이 채택되어 회원국이 모두 자국입법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 금년 6월 16일 중의원 22일 참의원을 통과하여 내년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제조물책임 입법의 방향과 주요내용

제조물책임법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은 제외국의 법제도를 고려하여야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아야 하며 개방화시대에 대처하여 국가간의 협약등 형평성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6월 27일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입법방향과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책임법의 책임원칙은 무과실책임으로 한다.



— 상품의 결함만 입증되면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결함을 책임 요건으로 하여 바로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상품의 결함만 인정되면 손해를 배상할 법적의무가 발생한다.

— 이는 제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건전한 거래 관행의 성립을 촉진하게 된다.

— 제조물책임에서는 무과실책임이 원칙이며 이는 어느 나라의 입법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채택한 이유로는 첫째 “제조자의 무과실책임은 특히 전문적인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최신기술에 의한 생산에 내재하는 위험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며 둘째 향후 입법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비정상적인 위험을 야기시킨 자는 과실이 없어도 그의 기업으로부터 생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위험은 기업의 코스트에 전가되어야 한다는 위험론에 그 입법의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 그 정책적 근거로 다음을 들고 있다. ① 제조자에게 책임을 가중시킴으로써 제품의 안전성향상에 도움이 된다. ② 제조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손실은 제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또는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그 부담이 분산 될 수 있다.

③ 제조자에 대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논리관념에 의하여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2) 법적용대상 제조물의 범위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과 부동산중 대량공급 주택으로 한다.

—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제조물의 범위가 산업발달과 더불어 점차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늘에 와서는 영리목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모든 동산을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제조 또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수렵물등은 제조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리고 부동산 중 대량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공급관행이나 거래실태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일일이 그 결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조물에 포함시켜야 하며 여기서 대량주택의 범위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하여야 한다.

(3) 제조물책임에서 결함이란 일반인이 그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한다.

— 이 경우 결함의 판단을 제품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 제품이 유통된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함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제조물책임에서는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결함이 있느냐를 책임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결함은 일반적인

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한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절대적인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안전성의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 여기서 무엇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인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가치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사회가 안전성을 보다 중시할 때에는 그 안전성은 보다 강화된 것이 될 것이다.

(4)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제조물에 성명·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② 판매·대여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제조물을 수입한 자 ③ 제품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각각의 공급자

- 제조물책임을 1차적으로 지는자는 결함제품의 제조자이다. 그러나 현대 고도산업사회에서는 제품생산 및 유통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함제품의 제조자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도록 한다면 제대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된다.

결함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간편한 구제를 위하여 책임부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외관법리에 따라 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를 부착함으로써 자기를 제조자로 오인하게 한 자도 제조자에 포함시켜야 하고,

○ 부품제조자나 원재료제공자는 제품의 결함이 그 부품이나 원재료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수입업자는 외국의 제조자를 대신하여 상품판매의 총책임은 지는 자일 뿐만 아니라, 국내소비자가 외국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함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공급업자는 일차적인 책임주체인 제조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할 수 없는 경우에 제조물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5) 제조자에게 일정한 면책사유를 인정하여 제조자가 이를 입증하는 경우 제조물책임을 면하도록 한다.

- 그 면책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조자가 그 제품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②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되었다는 사실, ③ 그 제품이 판매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④ 그 제품의 결함이 정부에서 정한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⑤ 제조자가 그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 ⑥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완성품제조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이러한 면책사유는 제조자가 실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 결함이 원인을 제조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그리고 개발위험항변은 유통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 알 수 없는 결함까지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 여기에서 개발위험에 개개 제조업자의 수준과 업계의 평균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제조자로서 알 수 있는 최고의 과학·기술지식의 수준을 말한다.

(6) 피해자에 대한 제조자의 사전면책이나 책임제한을 정하는 특약은 금지하도록 한다.

- 제조물책임은 일반민사책임의 원칙을 수정한 새로운 책임이다. 면책 특약이나 책임제한특약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일반소비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특약을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당하게 불리할 우려가 크다.

-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면책특약 등을 인정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배제시켜 제조물책임법을 강행법화하여야 한다.

(7) 피해자가 손해발생, 결함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제조자가 손해를 야기한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피

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도록 한다.

-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제품은 구식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이 요구되고 과학·기술의 수준은 계속하여 발전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품개발 당시의 기록, 제조당시의 기술수준 등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크다.

- 이로써 제조자의 방어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책임추궁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어 합리적인 제품개발계획이나 경영계획의 수립이 어렵게되는 등 제조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제조물책임

법이 제정되면 결함상품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가 지금보다 신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결함상품을 원인으로 한 법원의 분쟁해결 뿐만 아니라 재판외 분쟁해결방법인 조정제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의 안전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가 이루어 질것이다. 더우기 기업은 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 충실한 상품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므로 자발적으로 소비자보호에 나설 것이다. 기업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상품의 품질은 향상될 것이고 국제경쟁력의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